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39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6.

발 의 자 : 김성원 · 김상훈 · 박덕흠
안철수 · 김선교 · 이인선
정동만 · 유용원 · 고동진
김용태 · 박충권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특수임무부상자를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, 이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훈련으로 부상을 당하여 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.

또한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치료시설이 없어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,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안이라는 이유로 가명 또는 기간이 지난 의료기록 폐기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의 기준을 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급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2호, 제6조의2 신설).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호 중 “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(이하 “상이등급”이라 한다)으로 판정된 사람”을 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(이하 “상이등급”이라 한다)으로 판정된 사람

나. 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1~14등급까지의 장해판정을 받고 같은 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특별공로금 등 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보상) ①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로 결정된 사람 중 제3조제1호의 특수임무사망자로 등록된 사람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

람으로 보고 해당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.

②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로 결정된 사람 중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고 해당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 설>

3. (생 략)

<신 설>

라 한다)으로 판정된 사람
나. 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
관한 법률」에 따른 1~14
등급까지의 장해판정을 받
고 같은 법 제7조 또는 제
8조에 따른 특별공로금 등
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받
은 사람

3.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2(보상) ① 제6조에 따라
특수임무유공자로 결정된 사람
중 제3조제1호의 특수임무사망
자로 등록된 사람은 「국가유
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
법률」 제4조제1항제3호 또는
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
고 해당 법에서 정하는 바에
따라 보상을 한다.

②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
자로 결정된 사람 중 제3조제2
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된
사람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
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
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
하는 사람으로 보고 해당 법에
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

한다.